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82호 | 발행인 : 백선희 | 발행일 : 2020년 8월 13일 |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 과제: 원가정 보호원칙을 중심으로

I. 논의의 배경

-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정부는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실정임.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창녕과 천안에서 재차 발생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은 국민들을 공분케 하였음.
 - ▶ 무엇보다 코로나19 발병으로 비대면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하여, 아동학대 감시망은 약화되었으며, 아동이 폭력에 노출된 경우에도 가정에서 지내야 하는 등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¹⁾
- 정부는 2018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 5월에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는 등 거의 매년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 올해 3월과 4월에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였고,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정부는 아동학대 관련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표 1〉 2020년 개정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의 주요 내용

법 조항	개정사항	주요내용
「아동복지법」 제22조 제3항~제5항 신설 및 제46조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제9조~제12조 개정	아동학대 조사체계 공공화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신설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중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각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아동복지법」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신설	아동학대사례 전문위원회 설치	- 각 지자체가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에 신설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및 제13조 개정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요건 완화	- 아동의 학대피해가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발견되더라도 재학대 발생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와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에 대해서도 응급조치,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아동학대처벌법」 제51조 개정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 연장을 3개월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조정하고, 총 기간의 상한을 기존 4년에서 성년에 도달하는 때까지로 확장함.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3호 신설	아동학대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부과	-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자에게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출처: 「아동복지법」(법률 제17206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1. 시행 예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087호, 2020. 3. 24. 개정, 2020. 10. 1. 시행 예정).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참조.

1) 신동아(2020. 6. 30). 매년 증가 아동학대 신고, 코로나 이후 첫 감소 왜? - 집밖 못 나가니 피해상황 몰라...교직원 신고 73.3% 감소.

최근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이 재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원가정 보호원칙' 개선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 최근 발생한 천안과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해당 가정에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원가정에서 그대로 지나다가 재학대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학대 중에 발견된 사례임.
 - ▶ 이에 국회에서는 「아동복지법」상 원가정 보호원칙 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²⁾ 본고는 원가정 보호원칙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개정사항에 누락되어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II. 「아동복지법」상 원가정 보호원칙의 의미

원가정 보호원칙은 가정해체나 빈곤 등의 상황으로 인해 아동이 친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안양육체제에서 성장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함임.

- 「아동복지법」 제4조 제3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고 있음.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하며, 가능한 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 ▶ 정부는 '아동복지시설 치료재활 지원사업'을 통해 시설보호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평가 항목으로 시설보호아동과 부모 등 원가족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음.³⁾

- 최근 이러한 원가정 보호원칙이 아동학대의 또 다른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과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원가정 보호원칙을 규정하면서도,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나 유기 등 특별한 경우에는 부모와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음.

〈유엔아동권리협약〉

제9조 1. 당사국은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사법당국이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 외에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모와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나 유기 부모의 별거로 인한 아동의 거취 결정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20조 1.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가정을 박탈당했거나 아동에게 이롭지 않은 가정환경으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이하 생략)

- 원가정 보호원칙으로 인해 학대피해아동을 가해자가 있는 가정에 돌려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쉼터, 위탁가정 등의 인프라 부족, 소극적인 친권제한 적용, 철저하지 못한 사례관리와 원가정 회복 지원 부족 등의 문제로 기인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

최근 원가정 보호원칙이 아동학대의 또 다른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음. 원가정 보호원칙은 국제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단순히 이 원칙을 개정하기 보다는 부족한 인프라 및 원가정 회복 지원, 소극적인 친권제한 등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세계일보(2020. 6. 24). 아동학대 사망사고 막으려면 '원가정 복귀 지원' 폐지해야 [승재현의 법대로] (15), 연합뉴스(2020. 6. 23). 김종인 "학대아동, 부모와 분리해 국가가 보호해야", 노컷뉴스(2020. 6. 23). 아동학대가 반복되는 까닭 등을 참조함.
3) 보건복지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유엔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자료. pp.44-45.

Ⅲ.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 과제

-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원가정 보호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보호 조치 강화, 친권제한제도 정비, 원가정 회복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 다른 제도적 개선을 통해 원가정이 회복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만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여 아동이 안전한 원가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조치 규정 적용 강화
 -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은 지자체장이 관할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한 경우에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 원가정 복귀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가정 복귀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 다만,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응급조치나 긴급조치가 아닌, 「아동복지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아동의 분리보호의 경우는 사법부의 구속을 받지 않고 행정부(지자체) 판단으로 결정됨. 이에 가해부모가 시설이나 위탁가정에 분리보호중인 자녀의 귀가를 요구할 때 대응하기 힘든 점이 있어⁴⁾, 동 규정의 적용에 소극적임.
 - ▶ 이에 따라 실제 각 지자체는 학대피해아동 발생 시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응급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장성과 급박·현저성의 범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 개입이 불가능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 따라서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의 특별한 상황에서는 당장의 범죄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부모로부터의 아동 격리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 제15 조상의 보호조치 적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친권⁵⁾ 제한 제도 정비
 - ▶ 일본의 경우, 친권에 의해 학대행위자인 부모가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권한을 주장할 경우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어 2010년 민법을 개정하여 일정기간 친권을 정지하거나 친권의 일부인 자녀 양육과 보호 등 감독권을 정지하는 친권제한 제도를 도입하였음.
 - ▶ 우리나라도 2014년 「민법」 개정을 통해 친권 일시정지제도(제924조) 및 일부제한제도(제924조) 등을 도입하였으나, 실무상 적용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음.
 - ▶ 「아동복지법」은 친권 일부제한 및 상실제도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으며, 친권 일부제한제도의 경우에도 구체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활용이 쉽지 않은 실정임.

4)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2010). 제3·4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민간 보고서. p.23.

5) 친권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자녀에 대한 보호, 교양의 권리(민법 제913조),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징계권(민법 제915조), 자녀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민법 제916조) 등이 있음. 한편, 정부는 2020년 7월 29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민법상 징계권을 폐지하여 자녀 체벌 금지 인식을 확산해나간다고 발표하였음(KBS뉴스. 민법상 부모징계권 폐지 추진...아동 학대 가중 처벌 검토).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의 특별한 상황에서는 당장의 범죄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부모로부터의 아동 격리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아동학대에 대한 친권제한(일시 정지 포함)이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함.

- ▶ 「민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친권 제한 제도 간 차이가 있으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친권제한(일시정지 포함)이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함.

〈표 2〉 각 법률상 친권 제한에 대한 청구권자 및 제한 기간

구분	민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친권 일부제한	청구권자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1차: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 2차: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아동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	직권
			보호처분에 앞선 임시조치	직권
			피해아동보호명령	직권,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앞선 임시보호명령	직권
기간	2년 범위, 2년 범위 내 한차례 연장	구체적 규정 부재	아동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	1년, 2년의 범위 내 기간 변경 가능
			보호처분에 앞선 임시조치	2개월, 한차례만 2개월 범위 내 연장
			피해아동보호명령	1년, 6개월 단위로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까지 연장 가능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앞선 임시보호명령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
친권 일시정지	청구권자	제도 부재	친권일부제한의 청구권자와 동일	
	기간		친권일부제한의 기간과 동일	
친권 상실	청구권자	친권일부제한의 청구권자와 동일	아동학대중상해, 상습아동학대의 경우 - 1차: 검사 - 2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주: 아동학대처벌법은 2020년 10월 1일 시행예정인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였음.
출처: 백경희(2016). 아동학대에 대한 친권제한의 실효적 적용에 관한 고찰: 일본의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57(2), pp.162-164 표 내용을 보완함.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와 원가정 복귀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사후관리에 대한 권한 강화 및 원가정 복귀 절차 강화
 - ▶ 올해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음. 현장조사의 경우뿐만 아니라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부모와의 분리 등) 및 원가정 회복을 위한 사후관리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 있음.
 - ▶ 현재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행위자를 대상으로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관리 제도가 있으나,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어 현실적으로 가족기능이 회복된 원가정에서의 보호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 보호자가 학대사례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제재수단(예: 원가정 복귀 취소)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함.

김아름 부연구위원 kar22@kicce.re.kr

만족도 조사 참여하기(클릭)